
서천군 공공갈등 인식전환 및 역량강화 교육

- 일 시 : 2018. 10. 8(월), 14:00 ~ 16:00
- 장 소 : 서천군청 대회의실

서천군 공공갈등 인식전환 및 역량강화 교육

1 목적

- 서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 인식전환 및 역량강화 교육
- 공공갈등 이론, 타 지역 사례 분석 등 갈등해결을 위한 모델 적용 교육
- 현안문제 해결의 능력 향상 및 지식공유

2 내용

- 갈등 전문가 특강
- 공공갈등 인식전환 및 사례를 통한 대응 역량 강화
-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3 행사개요

- 일 시 : 2018. 10. 8.(월), 14:00 ~ 16:00
- 장 소 : 서천군청 대회의실
- 참석 대상 : 약 120명(서천군 공무원)
- 주최·주관 : 충청남도, 서천군, 충남연구원

4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50 ~ 14:00	10' ◦ 등 록	
14:00 ~ 14:10	10' ◦ 개 회	
14:05 ~ 14:20	15' ◦ 공공갈등관리 역량교육 -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충청남도
14:20 ~ 15:50	90' ◦ 공공갈등관리 역량교육 - 사례를 통해 보는 '갈등예방'의 중요성	주 건 일 (서울 YMCA)
15:50 ~ 16:00	10' ◦ 질의 응답	
16:00	◦ 폐 회	



목 차



I.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7

충청남도 갈등정책팀 유삼형 주무관

II. 사례를 통해 보는 '갈등예방'의 중요성 21

서울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주건일 팀장

부록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49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 충청남도 갈등정책팀 유삼형 주무관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목 차



I. 편제 및 인력



II. 기능과 역할



III. 성 과



IV. 기여와 한계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편제 및 인력

1. 편제 및 인력

행정조직상 갈등관리 기구

- ▶ 충청남도는 행정기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협력팀 소관업무 중 하나로 분장하여 다루어 왔음
 - 자치협력팀의 업무는 선거 사무와 갈등관리 사무, 인권 사무, 주민등록 업무 등 민원 사무 등이 분장되어 있었음
 - 이후 갈등업무의 비중이 커지게 되자, 2015년 1월 갈등관리 전담부서인 갈등관리팀(1팀 4명)을 도민협력새마을과 내에 신설, 운영
 - 2018년 조직 개편을 통하여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갈등정책팀으로 변경
 - 주요업무로는 공공갈등 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갈등관리조정협의회 운영, 공공갈등진단 및 갈등대응계획 수립, 갈등전문가집단 등 관리,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음

1. 편제 및 인력

행정조직상 갈등관리 기구



1. 편제 및 인력

법제도상 갈등관리 기구

☞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충청남도 공공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음
- 갈등관리심의위원은 전문가, 의회의원, 사회단체, 언론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도와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관리대상의 지정·조정, 갈등관련 조례의 정비, 공공갈등 진단 등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그밖에 도지사가 갈등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자문활동을 펼치고 있음

☞ 충청남도 갈등조정협의회

-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음
- 설치 목적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됨. 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의위원 중에서 선출함

1. 편제 및 인력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 ㉠ 최근 공공갈등이 점차 복잡화, 다양화 되면서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가 참여 필요
- ㉠ 충남공공갈등 연구팀은 갈등관리 전문기구로 지정·운영 중이며, 공공갈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원활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도모
- ㉠ 지정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8조(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지원)

-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기구(이하 “전문기구”라 한다) 등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갈등관리 전문기구의 운영 지정서를 교부한다.

7

1. 편제 및 인력

주요 추진경과

- ㉠ 충남갈등관리포럼 사무국 → 충남공공갈등연구팀 변경

- 2006. 6 : 상생협력·갈등관리 포럼 운영계획 통보(행정자치부→충청남도)
- 2006. 7 : 상생협력·갈등관리 포럼 운영계획 통보(충청남도→연구원)
- 2006. 10.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창립
- 2007. 5. : 포럼정관 개정에 따른 사무국 설치
- 2007. 5. 23. : 포럼운영기관 지정협약(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 2007 ~ 2016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운영
- 2016. 5. 4. : 충청남도 갈등관리전문기관 지정(충남연구원)

8

1. 편제 및 인력

2017년 주요 추진성과

- ㉠ **갈등영향분석 연구**
- 도, 시·군 선정 2건 수행
- ㉠ **갈등동향분석 4회(8건) 부분 발간**
- 열린충남 '상생+협력' 부분 발간
- ㉠ **갈등관리 기획과제 연구**
- 갈등관리 기획과제 연구 2건 수행
- ㉠ **갈등관리현장지원**
- 3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지원
- 지역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지원(4건)
- ㉠ **공공기관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 충남도, 시·군, 지방공기업 대상 총 7회 개최
- ㉠ **갈등관리관계관 교육연수 1회 개최**
- ㉠ **공공갈등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4회 개최**
- ㉠ **공공갈등연구팀 운영을 통한 갈등관리관계관 업무지원**

1. 편제 및 인력

인력 및 예산 현황

- ㉠ **공공갈등연구팀 인력 : 現 3명**
- 팀장 1, 전임연구원 1, 연구원 1
- ㉠ **운영예산 : 2018년 190,000천원 (도 출연금)**
- ㉠ **예산지원 현황**

연도별	재원			비고
	계	국비(특교)	도비	
2007	60,000	40,000	20,000	특교 40,000천원(06 재정인센티브)
2008	150,000	150,000	-	'07 상사업비
2009	50,000	20,000	30,000	
2010	50,000	50,000	-	특교 50,000천원('10 재정인센티브)
2011	90,000		90,000	
2012	140,000		140,000	
2013	140,000		140,000	
2014	140,000		140,000	
2015	140,000		140,000	
2016	162,000		162,000	
2017	170,000		170,000	
2018	190,000		190,000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기능과 역할

2. 기능과 역할

주요 업무

구분	중점 과제	주요 추진 내용
선제적 예방 체계 구축	사전진단제	◦정책 수립 단계부터 갈등을 검토하여 대응체계 수립
	갈등경보제	◦언론·여론 및 道 홈페이지의 민원 등 갈등 현황 파악하여 경보 발령 및 대응, 갈등 동향리포트 발생
	위원회 운영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운영 - 10개 분야 20명 (위촉직 15, 당연직 5)
	현안부서와 협업 강화	◦갈등 담당 합동 워크숍, 관리카드 운영, 매뉴얼 제작
사회적 합의 기조 관	협의회 운영	◦갈등해결을 위한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 보령공군사격장, 예당지 도수로, 서부내륙고속도로 갈등
	문화행사 및 교육추진	◦제3회 갈등해소문화행사,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갈등영향분석	◦주요갈등의 쟁점을 분석하여 해결방안 모색
	갈등전문기구	◦갈등조사·연구 등을 통한 갈등예방·해결 정책개발
	갈등현장 지원	◦도내 주요 갈등 현안에 대한 갈등관리 컨설팅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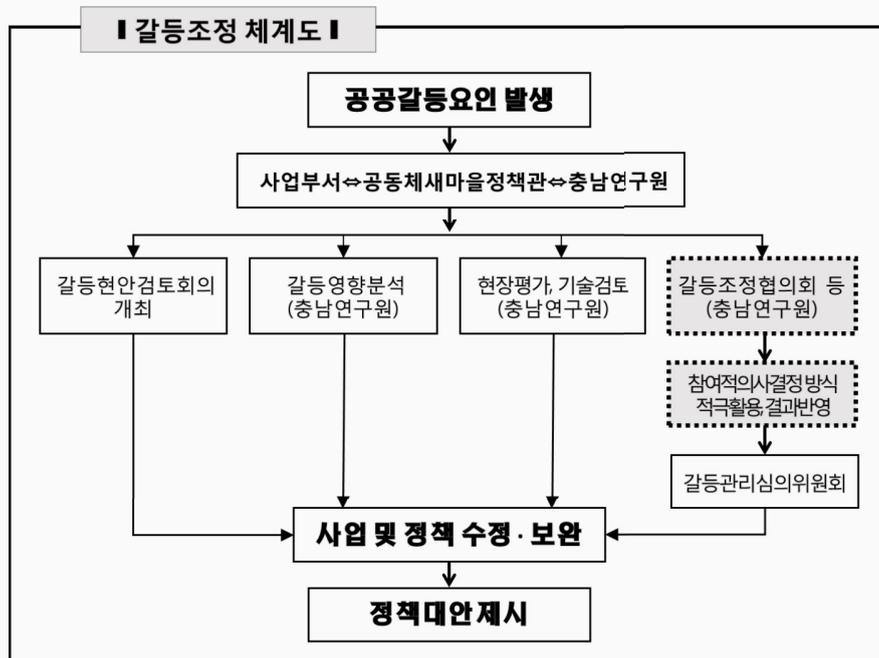
2. 기능과 역할

주요 업무

- ↳ 갈등현장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한 지원
- ↳ 갈등영향분석의 수행
- ↳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활용
- ↳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 ↳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조례·제도·문화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 상생·협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 ↳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2. 기능과 역할



14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성과

3. 성과

갈등관리 주요 추진 사업

☞ 공공갈등영향분석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사례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의 문제, 내·외부 환경 요인 분석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도내 갈등관리 목록(대상) 지정
- 갈등영향분석 대상 선정 및 결과 심의

☞ 갈등관리조정협의회 운영

- 공공갈등 당사자 간 조정·의지가 있는 사업 선정
- 20명 이내로 행정기관, 당사자, 전문가 등 참여

☞ 갈등관리 맞춤형 교육

- 지역주민 · 사회단체, 도 · 시군 공무원 등 대상
-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인식전환 교육(워크숍, 위탁교육)

3. 성과

갈등관리 주요 추진 사업

- ④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
 -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 갈등현장 지원 활동 전개
- ④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갈등관리 체계 구축
 - 갈등의 특성과 사안별로 구분 제작 실효성 제고
- ④ **공공갈등 사전 진단제**
 - 신규 공공정책 수립, 다수이용 공공정책, 선호시설 및 비선호 시설
 - 면밀 검토 진단(정책 개요, 갈등 내용, 대응계획, 해결방안 등)
- ④ **갈등현안부서 및 시·군지원**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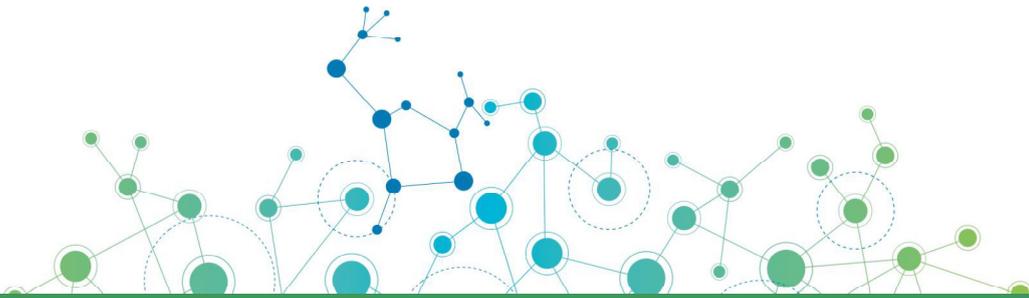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기여와 한계

4. 기여와 한계

기여

- ㉠ 법적, 조직적으로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음
 - 충청남도는 조례를 바탕으로 갈등관리시스템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부서를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음
 - 갈등관리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 조직적으로 명시된 기준이 있다면 조직 운영이 보다 효율적임
- ㉡ 갈등관리의 역할을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음
 - 보통 갈등관리시스템의 역할을 사후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충청남도는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제반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19

4. 기여와 한계

한계

- ㉠ 갈등관리평가 체계 구축 필요
 - 갈등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갈등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는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 주민참여형 갈등조정 미흡
 - 공공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은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 등으로 해결방안 수립이 필요하나, 사업에 대한 실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중심의 문제 접근 방법 지양 필요
- ㉢ 맞춤형 대응 부족
 - 중앙정부의 공공정책은 갈등발생 요인이 매우 높은 정책임에도, 지방의 권한이 미약하여,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사안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방의 권한 확대와 맞춤형 갈등대응 전략이 요구됨

20

4. 기여와 한계

향후추진방향

- ㄱ 道, 시·군 협력관계 구축
 - 道, 시·군간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갈등초기단계의 맞춤형 자문(컨설팅) 강화
 - 공공갈등의 유형, 道 및 시·군의 여건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
 - 정책소통 강화
- ㄴ 공공갈등 유형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갈등유형에 따른 연구 및 교육, 지역·분야에 따른 이론 및 현장 전문가 발굴 및 활용
 - 전문가 등의 갈등조정을 위한 역량강화 및 조정활동 강화
- ㄷ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 공공갈등의 효과적 대응 및 갈등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공공기관 교육 강화
 - 과정별, 참여자별 갈등관리 지식 공유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 ㄹ DB구축 및 사례집 발간
 - 갈등관리목록, 잠재갈등 요인 등 공공갈등 사례별 DB구축
 - DB를 바탕으로 공공갈등의 분석, 초기 갈등 대응방안 마련에 활용
 - 공공갈등의 과정별, 사례별 과정과 경험을 담은 사례집 발간

감사합니다



사례를 통해 보는 ‘갈등예방’의 중요성

- 서울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주건일 팀장

갈등 인식 개선 교육

공공갈등과 생활분쟁 해소를 위한 ‘주민참여’

주건일 센터장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 국내 처음, 이웃간 분쟁 ADR센터
- 조정과 갈등관리를 위한 공동체활성화 활동을 추진해옴
- “주민자율조정기구 / 갈등조정협의체” 등을 구성해, 공무원 및 주민들이 도시재생, 이웃분쟁, 님비문제 등을 주체적으로 풀어가는 문제해결 전문가가 되도록 돕고 있음.
- 서울시 50개 아파트 단지, 동주민센터 내 주민조정센터,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등 지자체 조정센터 구성 지원 등에 관여해옴.

○ 갈등상황에서의 공무원의 딜레마

갈등당사자이면서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 요구

법,제도 장치 미비 및 갈등해결 역량 미흡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의 경쟁과 힘에 의존한 문제해결방식 선호,
정당 프레임, 주민 민원해결사로서의 역할 강요

지역의 갈등인식 및 제3자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지역사회 리더- 공무원 역할의 중요성

공무원 헌장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갈등에 대한 이해와 해결방식

葛藤 - conflict

갈등은 사회의 고질(痼疾) 일까? 사회변화의 에너지일까?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방식 -- 전쟁과 WTO

갈등과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 재판과 조정

평화의 뿌리는 마음에 심고 평화의 열매는 몸으로 거두라

SEOUL YMCA

한국사회 갈등현황

국회의정연수원 박철규 교수 논문 中



SEOUL YMCA

한국사회 갈등현황

국회의정연수원 박철규 교수 논문 中

갈등이 많은 한국사회: 2010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갈등 정도가 심함(삼성경제연구소)

갈등관리 능력: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인 하위권, 10년째 자살률 1위, 이러한 사회갈등과 갈등관리 능력부재가 시민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을 끼치고 있음.

소송 공화국: 인구대비 소송 일본의 10배, 3세판 항소율 최고, 소송 만족도 최하, 소송비용 증가, 관계 단절 심화)

SEOUL YMCA

문제인식

- ◆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해
주민간 주먹다짐과 살인으로까지 문제 확대
- ◆ 정부의 다양한 지원 체계가 있음에도
심각한 문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SEOUL YMCA

층간소음 분쟁현황을 통해 본 공공갈등

- ◆ 2013년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폭증
- ◆ 국가의 분쟁해결역량 약화 = 주민 일상의 분쟁 심화로.
- ◆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공동갈등에 관심있으나, 주민분쟁에 무관심 (서울시는 2012년 갈등조정담당관 신설)
- ◆ 층간소음 : 응답자 46%는 참음, 방문해서 부탁 25%, 경비실 19%, 방문 후 항의 7%, 경찰이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는 비율은 1% 미만 (국민권익위원회2013년 11월 실시한 층간소음 설문)
- ◆ 서울시 층간 소음 발생 신고 건수 증가 (년 2,627건)

SEOUL YMCA

전국 지역사회 분쟁현황



정부 국책사업 민관갈등,
도시재생 사업 등 마을분쟁,
이웃분쟁 등 신고 건수 증가



SEOUL YMCA

분쟁은 어디서 발생하나?

- 서울시 주민 거주 현황

마을 거주자 16.4%

(서울시 인구 1000만명 기준)

공동주택(아파트)거주
자 83.6%

(서울시 인구 1000만명 기준)



SEOUL YMCA

-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공공갈등이고 생활분쟁일까요?
- 공공갈등과 생활분쟁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 그렇다면 왜?
-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지?

사례연구 : 가스충전소 입지 갈등 사례

갈등 상황

1. 갈등의 쟁점

- 쟁점 1 :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은 조속한 사업 및 건축허가 요구 강서구청의 민원대응에 대한 불만과 재정적 부담
- 쟁점 2 :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안전과 주변경관 및 주택가격 하락 등 이유로 충전시설 건립반대

- SH공사의 입지선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주민들에게는 갈등유발 기관이 SH공사로 인식되어 있는 만큼, SH공사가 전향적 자세를 보이며 적절히 소명하는 등 적극적 역할 필요
- 본 갈등조정 사안은 가스충전소 시설 설치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것이나 그 이면에 개발 소외 등에 대한 민원이 있는 일종의 복합갈등
- 이는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관계의 쟁점 정리 및 의견수렴'을 통한 쟁점파악은 물론 이해관계인들의 실익 일치 지점을 끌어내는 숙의과정 필요
- 부지이전 가능성 포함 서울시, SH공사의 다양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 예상

마곡도시개발사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과 가양동 일대의 3,363,591㎡ 부지에, 서울을 동북아시아 경제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 지식 산업단지(R&D) 및 국제업무단지를 건설하는 사업, 2016년 준공 예정

갈등 발생

2014

- 마곡지구 내 LPG 충전소 허가신청에 따른 마곡주민들 민원제기(동 허가신청 불허 요구 및 충전소 부지이전, 공동주택 300m내 충전소 불허 강서구 조례제정 요구)

계획 변경

2012

- 2012. 10.11. 계획 변경
- 워터프론트 사업 좌초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변경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2010

- 마곡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고시
- 마곡지구 개발로 인한 개인택시조합 충전소 폐업(2월 17일)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2007

- 2008년 12월 30일에는 마곡도시개발 실시계획이 인가
- 2009년 1월부터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2009년 하반기에 기반시설 및 단지조성을 위한 공사가 시작

마곡지구 개발계획 수립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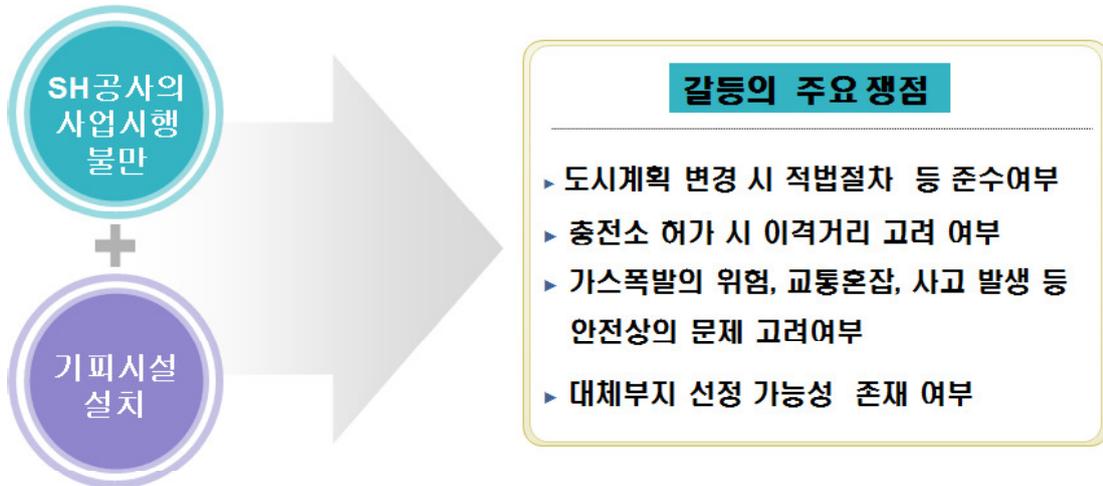
- 33대 오세훈 시장: 마곡지구 개발계획 수립(마곡도시개발사업과 한강르네상스를 연계한 수변 공간을 확충하는 마곡워터프론트 사업 진행)

이해관계인의 주장



<주요 이해관계자 별 주장 내용>

- 지역주민들: 안전과 주변경관 문제로 기피시설 건립반대
- 서울개인택시조합: 조속한 사업허가 및 건축허가 요구, 강서구청의 민원대응에 대한 불만과 재정적 부담



· 예외
 1~3 요건 충족 시 생략 가능: 개발구역의 변경 시 편입되는 면적과 제외되는 면적의 합계가 종전 도시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거나 1만 ㎡ 이상인 경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서울시 도시계획 변경 절차

1. 주민참여를 여는 제도기반 부족
2. 주민의 대화, 문제해결 역량 부족
3. 사회자본(신뢰, 관계, 공동체) 즉 갈등조정문화의 모판 부족
4. 오랜 기간 공무원과 주민간의 상호신뢰 무너짐
5. 공무원의 갈등매뉴얼 (서울시 갈등 경보제도)이나 초기대응 훈련 부재

SEOUL YMCA

1. 명확한 근거 조항 미비 및 상호 사실확인 절차 생략
2. 민원 대응과정에서 감정싸움 및 오해
3. 공무원 입장 vs 주민 입장간의 긴장
4. 이러한 문제를 초기부터 풀어 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장(시스템) 부재

SEOUL YMCA

1. 사실상 갈등이 노정되도록 대응하는 방식으로 일관
2. 주민갈등 증폭 요소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못한채
- 기존대로 밀어붙이기, 굳히기식, 절차갖추기식으로 일관
3. 대화와 협상을 통한 튼튼한 결과와 합의로 가기전에 이미, 단기적인 인센티브 던지기로 주민기대 키움

SEOUL YMCA

총평 :

- ①입장 충분히 듣기 →
- ②실제 욕구 파악하기 →
- ③이해 당사자 실익으로 이끌어 문제 좁혀가는 과정

없이,

주민을 자극하고, 풀기 어려운 싸움으로 비화되도록 함.

SEOUL YMCA

합의형성 과정을 통한 당사자들의 충분한 소통 계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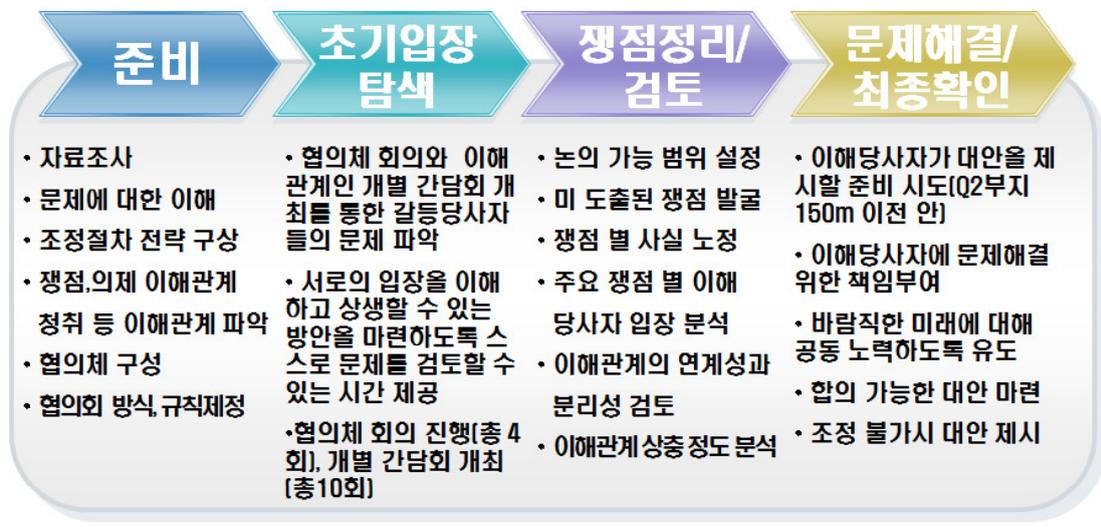
1. 오해와 불신 해소

의견수렴을 넘어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있는 불신과 오해가 해소되는 과정이 되도록 운영

2. 이해와 대화 통한 합의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이해공유는 물론 대화를 통한 합의 형성에 주력





[협의회 회의규칙]

1. 항상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특히 “내가 상대방이라면” 하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한다.
2. 말할 때와 들을 때 서로 존중하고, 내 생각과 다른 말이라도 틀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옳고 타당한 말이며, 단지 나와 상대방의 생각이 다른 것일 뿐임을 유념한다.
3. 말할 때 고성이나 비방, 인신공격 등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절대로 중간에 끼어들지 않는다.
4. 객관적으로 검증된 진실만을 말하며, 검증되지 않은 사실은 반드시 조정관을 통해 확인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자기 생각을 말한다.

[협의회 회의규칙]

5. 다른 사람도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발언시간을 꼭 지킨다.
6. 이해관계인들은 상호 대화하고 협력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며, 대화를 통해 상호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하며 모두 수긍할 수 있는 Win-Win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자세로 임한다.
8. 우리 사회의 갈등을 대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자세로 임한다.
9.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회자의 안내와 지도를 잘 따른다.

· 각 회의 단계별 당사자 간의 이해도 제고로, 조정과 타협 가능성 증대의 성과 조성(이해과정)

“주민대표와 택시조합, 주민대표와 SH공사, 주민대표와 강서구청 및 서울시의 견해 대립으로 갈등 증폭”

서로간 이해 부족
갈등 증폭

제1차 협의체 회의

“건별, 회의 단계별 갈등 요소로 작용하는 의문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 당사자들의 갈등사항 인식도 제고에 노력”

갈등사안의 명확한 인식
당사자의 입장 이해

제2차 협의체 회의

“쟁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주민대표와 서울택시조합의 견해가 일정부분 일치, 부지이전 가능성 등 화해와 조정가능성 증대”

화해와 조정
가능성 증대

제3차 협의체 회의

협의체 회의 경과

- 회의 개최 수: 총 4차례(12월 27일 기준)
- 장점: 쟁점 별 갈등해소와 대안마련을 위한 각 이해관계자 별 열린 자세 유지
- 단점: 이해관계인의 수가 많아 공동 협의 시간 및 장소 확정에 애로

이해관계자 개별 간담회 경과

- 회의 개최 수: 총 8차례(12월 27일 기준)
- 장점: 쟁점 별 각 이해 관계인의 입장변화 추이 이해 및 조정 용이
- 단점: 견해 대립 시 회의 개최 빈도 수가 증가하여 조정관의 피로도 증가



충전소 허가시 이격거리 고려 여부



<p>현 부지 충전소 설치</p> <p>갈등중독 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H/조합 측 견해 • 주민의 격렬한 반대 • 합의점 도출 불가 	<p>설치 백지화</p> <p>실현가능성 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측 견해 • 조합측의 피해 최대 • SH공사의 손실 다대 	<p>부지이전 가능성</p> <p>가장 합리적인 대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인 설득 가능 • 주민/조합 반대 최소 • 조합과 SH 피해 최소
---	--	--

★ 조정 합의 가능성이 농후한 부지이전 문제를 놓고 분석해 보고자 함.

합의 형성 가능성

갈등조정가(공무원)의 한계

1. 이 지역의 역사, 노정된 갈등의 역사를 모른다.
2. 이 지역에 다양한 인적 관계망이 없다.
3. 갈등조정 이후 공공분쟁이 어떻게 정리돼 가는지가 가까이 접할 필요가 없다.
4.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분쟁완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실천, 관리할 수가 없다.

SEOUL YMCA

그래서 필요한 것

1. 모든 공공갈등, 이웃분쟁의 당사자인 주민과 행정의 함께 우리 지역사회에 적합한 갈등조정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2. 주민과 행정 모두 갈등을 증폭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 하는 훈련과 행동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SEOUL YMCA

주민에게 없는 것들

- 사소한 생활 속 분쟁 해소 안된 심리적 스트레스
- 작은 분쟁을 해결해본 경험 부재
- 적절한 격려와 상담,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일상생활
- 폭발 직전 :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 주었다면
- 답답할 때 : 문제를 공개적으로 토로할 자리가 있었다면

SEOUL YMCA

공직자에게 없는 것들

- 행정에서 해결 할 수 없는
사적 갈등, 마을의 이해관계 사안을 자꾸 민원 받는다.
- 무어라 답할 기준도 모호한 민원들이 너무 많다.
- 민원 받다 할일 못하고 하루종일 보내는 경우가 있다.
- 차라리 법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민과 관, 주민이 참여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중간(완충)지대가 있다면!!

SEOUL YMCA

갈등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 텃밭과 도서관에서 풀린다. : 만남, 환경지원
- 서로의 생활패턴과 가족을 아는 것으로 풀린다. :
생활상 이해 기회 만들기
- 팩트를 알게되면 풀린다. :
정확한 기준과 주민협약의 필요성
- 충분히 들어 주면 풀린다. :
잘잘못 문제보다, 서운함에 풀어주는 것 중요
- 다툼의 대상이 협력자가 되면 풀린다 :
서로 이해(이익)이 일치하는 지점을 찾아준다.

SEOUL YMCA

그런데,

외국에는 이웃분쟁-지역사회 갈등에 대해,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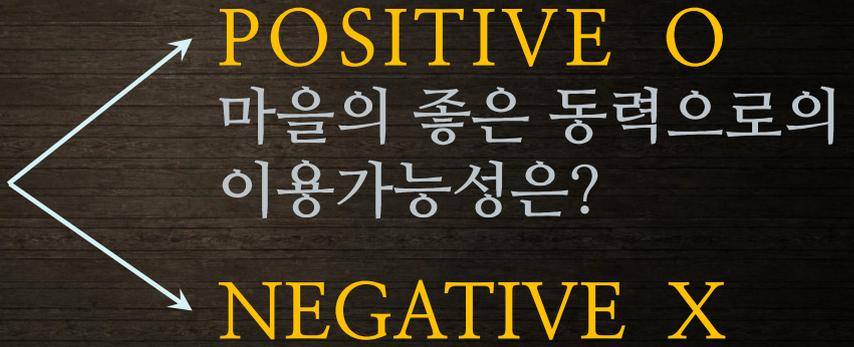
-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SEOUL YMCA

LET'S
TALK!

분쟁 해결의 대안은?

갈등
葛藤 conflict



SEOUL YMCA

국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운동
: 대안적 분쟁해결 운동의 도래원인

- 소송증가로 인한 법원 업무 줄이기
- 국가 소송비용 절감
- 법 이전, 주민 스스로 문제를 다루는 운동 시작
- 일단 분쟁이 벌어지고 나면,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
- 관계가 깨지고, 그 것이 공동체로, 지역사회로 확산됨을 인식
- 분쟁의 사전 예방과 해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활동이 바로,
- 주민 공동체 회복임을 인식

SEOUL YMCA

국외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운동 : 대안적 분쟁해결 운동의 도래원인

- 공교육에서 협상, 조정, 중재 교육 / 로스쿨 평화교육수업 의무화
- PEACE MAKER 주민리더를 양성(원로, 주부, 일반시민 교육)
- 일반시민과 로스쿨 졸업생 대상 일자리 창출
- 대안적분쟁해결법(미국 1980년대) / 주민분쟁해결센터법(싱가폴 1997년) 제정
- 국내에는 아직 법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

SEOUL YMCA

갈등관리 선진국

NEIGHBOURHOOD
JUSTICE CENTRE

네이버후드 저스티스 센터
미국 전역

미국



400개



주민조정가

12,000명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회복
시스템 확보

주민자치센터, 법원
등을 지자체에 골고루
배치하며 발전

SEOUL YMCA

갈등관리 선진국



THRIVING·영국번영센터

영국 고 도시 재건축,
개발이 아닌 도시보존
공동체활성=갈등예방

영국



주민의식과 역량 강화 시스템 구축

주민이 직접
재판 및 결정
지역 문제 푸는
기회제공



영국 전역 치안판사 제도

SEOUL YMCA

이웃분쟁 조정설명서

저자: 도나 쿠퍼 교수
(Queensland University in Australia)
발행처: 퀘즐랜드 분쟁해결센터
번역 및 발간: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YMCA 이웃분쟁조정 총서 ①



이웃분쟁 조정 설명서

Neighbourhood Mediation Kit

010-5500-1111

YMCA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도입국가

국회의정연수원 박철규 교수 논문 中

도입국가:

미국 United States
캐나다 Canada
호주 Australia
영국 England
싱가포르 Singapore
말레이시아 Malaysia
네팔 Nepal
ETC



현재 미국의 (neighborhood justice center·이웃정의센터) :
약 400여개의 프로그램,
약 1,300명의 전임종사자,
2만 명 이상, 훈련 받은 '시민 조정인'이 활동 중.
(NAFCM 2011년도 연간 보고서)

SEOUL YMCA

제1기 YMCA 이웃분쟁 주민자율 조정위원회 이웃사랑해



사진:
이웃 분쟁해결을 위한 주민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아이디어를 적은 '소망나무'

SEOUL YM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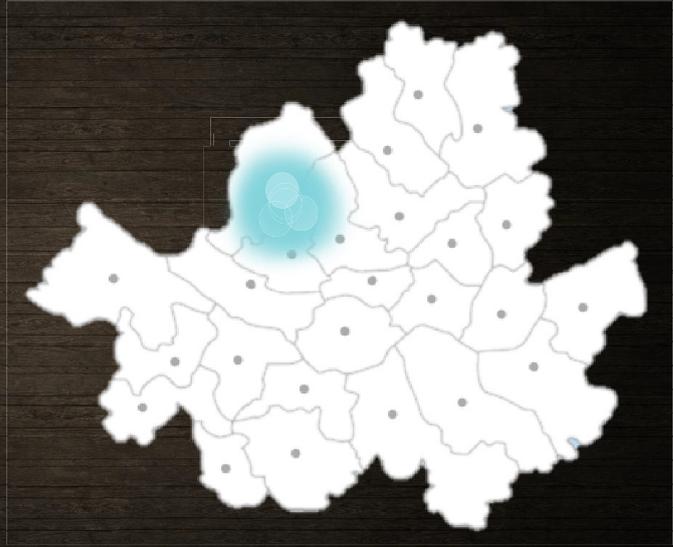
시범단지 선정

STEP 1

서울시의 행정지원을 통해
은평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무료컨설팅 참여
공문발송

STEP 2

주민들의 활동 의지가 있는
은평뉴타운 제각말(3년차),
하늘채(10년차) 2곳을 선별



SEOUL YMCA

시범단지 현황

명칭 : 은평뉴타운 제각말 5단지
(501-513동)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면적 : 대지, 32,286.6m²

준공 : 2010. 09. 08.



건물현황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주택현황 : 330세대 (건축면적 6,217.59m²)

SEOUL YMCA

주민간담회 및 욕구조사

기간: 2013년 4월1일 ~ 4월 30일

- 주민간담회 통한 의견 청취(총 5회)
- 설문조사를 통해 이웃간 분쟁에 대한 주민반응(삭힘)과 해소 위한 아이디어
- 교육 내용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 제고
(주민중심 아이디어 만들기/ 교육시간제고/ 모집방법/
주민모임 위한 물리적공간 부재/ 주민재능다양/ 공동체향수/
지자체 프로그램과 연계/ 타 아파트와의 주민교류중요)



SEOUL YMCA

주민자율조정위원 구성

모집 공고 : 2013년 5월1일 ~ 5월 30일

위원 구성:

노인회장 등 마을원로,
부녀회 임원, 적극적인 자원봉사자,
자치구 커뮤니티 플래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층간소음 피해 주민,
참여의식이 있고 마을에 애정이 있는 사람

인원 : 12명으로 선별해 구성

임기 : 교육 이수 일로 부터 2년



SEOUL YMCA

주민교육

활동명:

제1기 YMCA 이웃분쟁
주민자율조정위원 양성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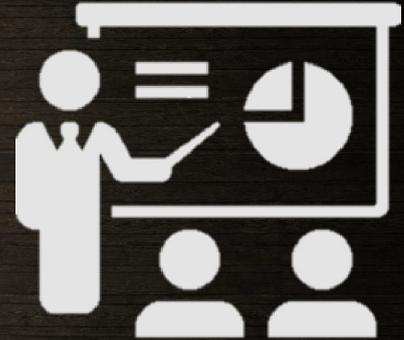
교육일정:

2013년 7월 18일, 19일, 20일, 23일

교육내용(서울YMCA 이웃분쟁 전문가 위원회가 전담)

- 갈등이해 및 관련 사례
- 마을 이해교육
- 주민자율조정위원회 역할과 갈등조정실습
- 관련 법 규정
- 주민 아이디어 워크숍 및 주민협약 초안 구성
- 상담 및 기록 실습 등

협력기관: 서울시, 은평구 주택과, 마을공동체과



SEOUL YMCA

주민중심 활동은?

- 이웃분쟁 해소 위한 주민 “소망나무” 게시
- 주민 재능기부를 통한 역사강좌, 심리학강의, 리본공예 등 주민프로그램 추진
- 인사하기 캠페인, 위 아랫집 편지쓰기 캠페인
- 엘리베이터 주민 소통게시판 등 지원
- 주민 공간 구성 지원(텃밭, 도서관, 사랑방) 구성

SEOUL YMCA

이웃간의 갈등을 '뺑' 뚫어드립니다. 우리 같이 살래요?

이웃사이 갈등, 이제 우리가 직접 해결해요~
층간소음, 주차문제, 쓰레기 투기, 애완동물 등 이웃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웃없는 아파트가 아니라, 불편한 빌라가 아닌
함께 해서 즐겁고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우리마을~
우리가 주인이 되어
왕십리2동의 갈등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리더를 초대합니다-!

회차	일시	내용
1강	5월 26일	우리 함께 나아가요 (마을열기)
2강	6월 02일	마을에서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3강	6월 09일	이웃분쟁 어떻게 해결하세요?
4강	6월 16일	서울시는 어떤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까?
5강	6월 23일	우리동네 주민갈등 이야기
6강	6월 30일	이웃분쟁 상담의 방법과 기술
7강	7월 07일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평화로운 마을공동체 - 주민협약 만들기
8강	7월 14일	소감 및 우리의 역할 나눔

- 기 간 2017. 5. 26. ~ 7. 14. (총8회) ※ 매주 금요일 16시 ~ 18시
- 장 소 동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
- 대 상 왕십리2동 주민 전체
- 내 용 주민 스스로 이웃간의 갈등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사례공유 및 참여형 프로그램 진행



SEOUL YMCA

마을 주민자율조정위원회 구성

위원 구성:
노인회장 등 마을원로,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등 적극적인 자원봉사자,
YMCA 담당자,
참여의식이 있고 마을에 애정이 있는 사람

인원 : 12명으로 선별해 구성

임기 : 교육 이수 일로 부터 2년(성동구와 YMCA 공동위촉)



SEOUL YMCA

부 록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 2010-11-10 조례 제 3544호

(일부개정) 2014-07-10 조례 제 3915호

(전부개정) 2014-12-30 조례 제 394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성숙한 지방자치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합리적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간의 충돌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갈등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전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원인이나 요인을 조사·분석 및 그 영향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공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도내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도정 갈등: 도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2. 그 밖의 갈등: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② 적용대상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도지사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도정 전반에 걸쳐 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공공갈등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한다.
2.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한다.
3. 소속 공무원에게 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2장 예방과 해결의 원칙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상호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할 때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판단될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충실히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전문가, 각계 대표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9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2. 도 및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관리대상 등의 지정·조정
3.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4조 제2항에 따른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5.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6. 제15조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참여
7. 그 밖에 도지사가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심의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충청남도회의의장 및 시·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경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심의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 부서장의 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업무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공공갈등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제14조(설치)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위원은 도지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2. 전문가
3. 심의위원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의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갈등관리 전문기구

제18조(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기구(이하 “전문기구”라 한다)등을 지정·활용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갈등관리 전문기구의 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갈등관리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갈등현장 조정·해결 지원
2. 갈등영향분석의 수행
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배포·활용
4.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6.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조례·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7. 상생·협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8. 그 밖에 도지사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19조(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점검·평가 등) 도지사는 년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갈등영향분석, 자발적·체계적 활동,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 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또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심의위원, 협의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2조(비밀유지) 심의위원 및 협의위원,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3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도지사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 및 갈등관리 전문기구와 그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심의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

